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 안 이 유

- 시대환경의 변화, 세입기금의중단, 내무부의 사업폐지 지침 (관련 훈령폐지) 등 제도변경으로 인하여
- 도에서의 운영관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
- 잉여자금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폐지조례 부칙에 명시

3. 칙 부

-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- 참고자료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(조례
제1213호, 1982. 8. 6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미회수 상환금에 대한 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응자된 미회수 상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회수하되, '96년도 회수액은 일반재원화 하고 '97년 이후 회수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입하여 활용한다.